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2005644 판결 [매매대금등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4나20056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52527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담당변호사 강신묵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E

2. F

3. 주식회사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훈, 이수민

변론종결 2024. 8. 14.

판결선고 2024. 9.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525273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① 원고 A에게 47,5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원고 B에게 94,098,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원고 C에게 203,40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각 2022.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고 한다)에게 15,000,000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부터 2022.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① 피고 E은 원고 A에게 47,52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원고 B에게 94,098,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원고 C에게 203,404,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9.부터, 원고 D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각 2022.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F은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9. 2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는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9. 13.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운동시설로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찬성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부설주차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원하는 형태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위한 허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결의를 얻어 줄 의무도 없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표, 판사 이경훈, 판사 김제욱